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873 판결 [소유권경정등기말소등]

재판경과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14 선고 99나15124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아AAA대AB(소송대리인 변호사 안BA)

【피고,상고인】 아CACACA아성군파종친회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14. 선고 99나151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대AB에서 1997. 1.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DA을 회장으로 선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시총회에서 이DA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결의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종종 대표자가 형사문제로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종규약 등에서 이를 대표자 권한의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총회의 소집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대표자의 일신전속권으로 볼 것은 아니며, 종종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종종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니(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참조) 원고 대AB의 회장이었던 이EA가 위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기 이전에 부회장인 이EB에게 이미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대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아산이씨 아성군파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고 한다)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피고 박CB,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과정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대AB와 피고 종친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대AB 소유인데 그 회장이었던 이EA가 허위의 정기대의원총회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피고 종친회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